

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22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5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정이유

- 우리군에서는 舊 「지방재정법」 제118조의3 규정에 의거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·운영하여 왔으나 동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가 신설되었으며,
- 군민들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재정정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 -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,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(안 제3조)
 - 15인 이내(위원장 포함)로 공무원, 대학교수, 사회단체대표,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
 -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위원장의 직무(안 제4조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『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』와 통합하여 운영 (안 제5조)
-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 - 위원회는 정기회의(정기공시시) 및 임시회의(수요발생시)로 구분
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-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
(안 제8조)
-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
(안 제9조)
- 『평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』는 폐지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(2006. 3. 15 ~ 4. 7)
- 다. 예산조치 : 없음
- 라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, 대학교수, 사회단체 대표,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 통합운영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

②간사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지방재정공시 관계 법령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시행령
<p>제60조 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.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.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. 채권관리현황 5. 기금운용현황 6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.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68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공통공시”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특수공시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<p>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</p> <p>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</p>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시행령
	<p>제69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총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.</p> <p>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공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71조(재정운용상황의 보고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
지방재정법	지방재정법시행령
	<p>제72조(공시에 대한 조치 등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</p> <p>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·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,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.</p>

지방자치법	지방자치법시행령
<p>제124조 (예산의 이송·고시등) ①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25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</p> <p>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p>	